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5.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고명욱 의원 등 7명(이진환, 최홍린, 서보영, 황국주, 도하석, 박정환)
- 발의일자: 2026. 1. 22.
- 회부일자: 2026. 1. 22.
- 상정 및 의결: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6. 2. 3.)

2. 제안이유

-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대상,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안 제6조 ~ 제7조)
- 포상(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6. 1. 22. ~2. 1.):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최윤미)

- 본 제정 조례안은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협력체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이면서 외국인주민인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추가 적용하여 지원 누락을 방지하고,
 -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상담, 안전교육,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안전사고는 의사소통의 한계와 안전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각종 위험에 노출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말 기준 등록 외국인근로자가 2,896명에 이르고 있어 제도적으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본 제정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안전 사각지대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